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문화체육과장 박은경)

□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에 의거 기금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·건립이 달성된 바,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을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10. 4. ~ 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조례 폐지안으로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」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이전·건립이 달성되어,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하고자 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
- 제 정 일: 2015. 6. 24.(문화체육과)

- 조례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목적 및 재원 조성, 기금 용도 관련 사항
-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
- 기금의 존속기한(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)

다. 종합 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¹⁾에 따라 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²⁾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-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「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」

- 목적: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·운용
- 설치년도: 2015. 6. 24.
- 조성재원: 일반회계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, 교부금 및 보조금 등
- 지원대상: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비, 건축비, 이전 건립 시까지 현 시설의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, 부대비용
-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(2023. 10. 31. 기준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조 성 액 | | | | | 집행액 | 잔 액 (a-b)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계(a) | 전입금 | 보조금 | 이자수입 | 기타수입 | 비용자성 사업비(b) | |
| 계 | 35,323,575 | 26,412,800 | 7,160,000 | 1,309,901 | 440,874 | 32,969,405 | 2,354,170 |
| 2016년 | 7,000,000 | 7,000,000 | 0 | 0 | 0 | 0 | 7,000,000 |
| 2017년 | 6,582,449 | 5,943,800 | 450,000 | 188,649 | 0 | 2,430 | 6,580,019 |
| 2018년 | 2,562,939 | 0 | 2,407,500 | 155,439 | 0 | 11,630,037 | △9,067,098 |
| 2019년 | 4,693,750 | 3,234,000 | 1,237,000 | 222,750 | 0 | 921,745 | 3,772,005 |
| 2020년 | 6,492,782 | 3,235,000 | 3,065,500 | 192,282 | 0 | 1,772,026 | 4,720,756 |
| 2021년 | 3,637,584 | 3,000,000 | 0 | 203,314 | 434,270 | 3,835,310 | △197,726 |
| 2022년 | 4,221,105 | 4,000,000 | 0 | 221,105 | 0 | 10,609,642 | △6,388,537 |
| 2023년 | 132,966 | 0 | 0 | 126,362 | 6,604 | 4,198,215 | △4,065,249 |

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, 기금 잔액은 일
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
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